

#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24-686호

##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·제조·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등을 대상으로 '23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.

-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

구 분	선정 기준
건설·제조 중소기업	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·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& '23년 매출이 30%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& '23년 매출이 50% 이상 감소
수출 중소기업	①·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- '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기업 -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- 한국무역협회 선정 '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', '수출의탑 수상기업' -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닐 것
고용 위기지역	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

- 연장기간 : 3개월
- 연장된 납부기한 : 2024. 7. 31.(수)까지

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담당부서 : 서대문구청 세무2과 (02) 330-1170, 1352

2024. 4. 25.

서 대 문 구 청 장